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목 차>

1. 부적합 처분 제품의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김진환
	담당부서 (과)	수입식품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강민호		연락처	043-719-2159
	과장	강민호		이메일	mfdskjh@mail.g o.kr

2026. 04. 02. 작성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 강민호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적합 처분 제품의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2.규제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0조		
	3.위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4.20~2026.06.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통관·유통 단계 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 재수입 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원인물질의 위해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5회 실시 * 정밀검사(무작위검사 포함) 부적합 건수: ('23) 1,336 → ('24) 1,414 → ('25) 1,375 ○ (문제점) 부적합 이력 제품의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으나, 현행 기준은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는 제한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이력 제품의 재수입 시 정밀검사 부적합률(7.46%)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수입식품의 부적합률(0.96%)보다 7.8배 높음('25년 실적 기준) ○ (필요성) 위해도가 높은 검사 항목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여 차등 관리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우려가 높은 검사 항목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5회에서 20회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밀검사 횟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1~3등급)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26년 하반기) ** (행정규칙)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위해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반영 예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수입식품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수입식품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269개소 *최근 5년 평균 수입식품법 제21조에 따른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동 법 제25조에 따른 유통단계 수거, 검사 결과 위해등급(잠정) 1~2등급 검사항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영업자 수 : 통관단계 부적합 236개소, 유통단계 부적합 33개소 ** '25년 12월말 기준 영업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49,149개소의 0.54% 수준임	
	9.규제목표	○ (위해 우려 수입식품 안전 강화) 위해도 중심의 검사 체계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 검사 업무 효율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현 행	개 정 안
<p>(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p>	<p><u>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통관·유통단계 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 재수입 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부적합 원인물질의 위해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5회 실시
 - * 정밀검사(무작위검사 포함) 부적합 건수: ('23) 1,336 → ('24) 1,414 → ('25) 1,375
- 부적합 이력 제품의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으나, 현행 기준은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는 제한적임
 - * 부적합 이력 제품의 재수입 시 정밀검사 부적합률(7.46%)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포함) 수입식품의 부적합률(0.96%)보다 7.8배 높음('25년 실적 기준)
 - 위해도가 높은 검사 항목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여 차등 관리 필요
- 위해 우려가 높은 부적합 이력 제품에 대해서는 20회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1~3등급)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26년 하반기)
 - ** (행정규칙)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위해도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반영 예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규제 대안의 주요 내용

- (위해도 기반 검사 횟수 차등화) 현행 일률적인 5회 정밀검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적합 원인 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검사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개정하여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또는 횟수에 따를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함
- 부적합 처분의 위해 등급 분류 및 검사 횟수 적용(안)(1~3등급)

- 1등급(20회) : 국제암연구소(IARC) Group 1 물질(벤조피렌 등), 방사능 기준 부적합, 부정물질 등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은 항목
 - 2등급(10회) : IARC Group 2A·2B 물질, 중금속(납, 카드뮴 등), 잔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
 - 3등급(5회, 기존과 동일) : 대장균,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이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항목
- *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검출 물질 위해도 등급 분류(1~3등급)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예정('26년 하반기)
- ** (행정규칙)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위해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 반영 예정

나. 대안 선택 근거 및 타당성

- (부적합 재발률의 현격한 차이) 2025년 기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의 재수입 시 정밀검사 부적합률은 7.46%로,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수입식품의 부적합률(0.96%)보다 약 7.8배 높게 나타나 집중 관리 필요
- (규제의 실효성 및 경각심 제고) 현행 5회 정밀검사는 영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합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고(高)위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수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위해도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화) 모든 부적합 제품에 동일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대신, 인체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수입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목표

- 위해 우려 수입식품 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 위해도 중심의 검사 체계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 검사 업무 효율화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부적합 이력 제품의 정밀검사 부적합률(7.46%)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포함) 수입식품의 부적합률(0.96%)보다 약 7.8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 또한, 검사 강화의 상한선을 ‘20회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여 행정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 하였으며, 위해도가 낮은 항목은 현행 수준(5회)을 유지함으로써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과 관련된 법령등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술영향평가 대상 아님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수입식품 업계의 특성상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영업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규제 강화 시 검사 수수료 및 통관 대기 시간 등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이 발생 가능하나, 부적합 이력 제품의 재수입 시 정밀검사 부적합률(7.46%)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수입식품의 부적합률(0.96%)보다 약 7.8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 해당 규제는 수입 영업자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만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모든 영업자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면제 또는 완화) 적용 시 고(高)위해 식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으나, 위해도가 낮은 항목은 현행 수준(5회)을 유지하여 영세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였고, 검사 강화의 상한선을 ‘20회 이내’ 로 명확히 설정하여 행정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제고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p>⑤ 예비분석내용</p>	<p>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p> <p>② 차등화 대상 결정 - 동 규제는 수입 영업자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만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모든 영업자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면제 또는 완화) 적용 시 고(高)위해 식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p>
<p>⑥ 차등화적용 여부</p>	<p>차등화 적용 불필요</p>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제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준수 여부 판단을 민간 재량에 맡기는 방식의 시장유인적 설계는 적절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규제의 지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네거티브 리스트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사후 평가관리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규제 적용이 불가함
규제 샌드박스		동 규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불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 제3국산 특정 상품의 EU 반입을 규제하는 공식통제 및 긴급조치의 일시적 강화>

1. **(개요)** EU 외 국가(제3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및 사료 중, 공중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통제 수준을 일시적으로 상향 하여 적용하는 법적 근거임. 이는 EU 식품 안전 기본법(Regulation (EU) 2017/625)을 근거로 한 하위 시행규정

2. 주요 목적

- **(소비자 보호)** 잔류 농약, 미생물(살모넬라 등),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 화학적 오염물질로부터 EU 시민의 건강 보호.
- **(위험 기반 통제)** 과거 위반 이력이나 새로운 과학적 위험이 감지된 품목에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부속서(Annex)에 명시된 품목별 차등 규제

구분	주요내용	비고
Annex I	(일시적 통제 강화) 수입 시 서류, 현물 검사 빈도(비율)를 높여 관리하는 품목군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초기 단계
Annex II	(긴급 조치/특별 조건) 수출국 정부의 공식 증명서 및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이 필수인 품목군	고위험군
Annex IIa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는 품목군	최상위 규제

3. 주요 규제 절차

- 사전 통지 : 수입업자는 화물 도착 전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를 작성하여 통합 관리 시스템(TRACES)에 신고해야 함
- 지정 입국 지점(BCP) 통과 : 해당 규정 대상 물품은 특수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지정된 국경 검사소만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
- 검사 수행 : 부속서에 규정된 비율(예: 10%, 20%, 50% 등)에 따라 무작위 또는 전수 현물 검사 실시
- 비용 부담 : 강화된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검사 및 분석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사업자)가 부담

○ 타법사례

1. 관세 분야 :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차등관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2. 환경 분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신규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 ③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보완하는 등 기록·관리(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
4. 하수·분뇨 관련 영업 등
 - 가.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
 - 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5. 가축분뇨 관련 영업
 - 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
 - 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
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9)
9. 비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0)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
 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서식) ① (생략)

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 대상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위해 등급(1~3등급)에 따른 검사 횟수(5~20회)를 추후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명시함으로써, 영업자가 부적합 발생 시 직면할 법적 결과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 가능하며, 일률적인 강화가 아닌 위해도 기반의 차등 적용으로, 저위해 항목 위반 시에는 현행 수준(5회)을 유지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에 따른 불응요인을 최소화함
-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순응 유도) 본 규제는 모든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규제가 아니라, ‘부적합 판정’이라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는 ‘이력 기반 규제’임. 영업자는 정밀검사 비용(수수료 등)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전 단계에서 제조사 관리 및 자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자발적 순응을 선택할 유인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 활용) 식약처의 수입식품통합시스템과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이 이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개정된 검사 횟수를 시스템에 설정하는 것만으로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규 조직 구성이나 대규모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수입 검사 인력과 절차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임
-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위해 등급 분류 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집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 재정 부담의 최소화) 본 규제는 별도의 보조금 지급이나 대규모 공공 시설 구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초기 비용 역시 기존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함

-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회수)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피규제자인 수입 영업자가 부담하므로, 검사 횟수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의 상당 부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상쇄됨
- (사회적 편익의 재정적 가치) 규제 준응도 향상을 통해 고위해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 사고로 인한 사회적 의료 비용 및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는 재정적 절감 효과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수입단계 위해도 중심의 과학적 검사와 수입자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부적합 물질별 인체 위해등급(1~3등급)을 정하고, 부적합 이력 동일제품 재수입 시 등급별 정밀검사 차등 적용 관련 국정과제 선정 ('25.8월)
 - * 국정과제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④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규제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및 입법예고전 부서 의견 조회('26.2~3월, 식약처 전 부서)

2. 향후 평가계획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의 검사항목별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 한정하여 수입검사 시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고위해 수입식품 차단 체계 구축) 일반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7.8배 높은 이력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고위해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규정을 마련함
- (비례 원칙 준수를 통한 피규제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 저위해 항목은 현행 검사 수준을 유지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검사 상한선 명시와 전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영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임
- (자기 책임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질서 확립) 부적합 발생 시에만 적용되는 이력 기반 규제로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 전 단계에서의 자발적 검사 문화를 유도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부적합 처분 제품의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551.98		9,551.9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555.92	-555.92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551.98	555.92	8,996.06
기업순비용		9,551.98	연간균등순비용	1,207.1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적합 처분 제품의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위해등급(잠정) 1~2등급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활동제목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 수수료 지출 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9,551,980,09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등급 부적합 건수 X 증가하는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15회) + 2등급 부적합 건수 X 증가하는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5회)) X 정밀검사 수수료((31*15+360*5)*532966)																																			
근거설명	<p>-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 결과 연간 발생하는 1·2등급 위해 항목 부적합 평균 건수('21~'25년, 5년 평균) : 1등급 31건, 2등급 360건</p> <p>(표1) 통관 및 유통단계 위해등급(잠정)별 부적합 건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균</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h>2024년</th> <th>2025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416</td> <td>1,478</td> <td>1,513</td> <td>1,432</td> <td>1,507</td> <td>1,479</td> </tr> <tr> <td>1등급</td> <td>31</td> <td>31</td> <td>37</td> <td>33</td> <td>28</td> <td>26</td> </tr> <tr> <td>2등급</td> <td>360</td> <td>204</td> <td>391</td> <td>436</td> <td>377</td> <td>393</td> </tr> <tr> <td>3등급</td> <td>1091</td> <td>1,243</td> <td>1,085</td> <td>963</td> <td>1,102</td> <td>1,060</td> </tr> </tbody> </table> <p>*근거 : '25 수입식품등 검사연보, 수입식품통합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부적합 긴급통보목록</p> <p>- '21~'25년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 검사 수수료(평균) : 532,966원</p> <p>- 위해등급 선정기준(잠정) : 1등급(유해물질 검출(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식용불가원료등), 곰팡이 독소기준 위반(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 2등급(중금속기준 위반(납, 카드뮴, 비소 등), 잔류농약·동물약 허용기준 위반, 식중독균 검출)</p> <p>- 연간 중복적으로 부적합을 받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있어 피규제자 집단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비용을 산출하는 것보다 부적합 건수별 증가하는 수수료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산출방법임</p> <p>* 통관·유통단계 검사결과 1~2등급(잠정) 부적합 이력 피규제자 수('21~'25년, 5년 평균 : 269개소)</p>	구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16	1,478	1,513	1,432	1,507	1,479	1등급	31	31	37	33	28	26	2등급	360	204	391	436	377	393	3등급	1091	1,243	1,085	963	1,102	1,060
구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16	1,478	1,513	1,432	1,507	1,479																														
1등급	31	31	37	33	28	26																														
2등급	360	204	391	436	377	393																														
3등급	1091	1,243	1,085	963	1,102	1,060																														

		(표2)통관·유통 위해등급(잠정)별 건수 비율을 적용한 업체수(피규제자수)				
구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79	954	999	973	1,007	961
1등급	23	21	29	27	23	17
2등급	246	138	265	305	255	265
3등급	710	795	705	641	729	679
		*근거 : '25. 수입식품등 검사연보, 수입식품통합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부적합 긴급통보목록				
		※ 통관단계 부적합 영업자는 5년 평균 부적합 이력 업체 수에 위해등급(잠정)별 발생 비율 적용하여 산출				

(정성)영향집단명	위해등급(잠정) 1~2등급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활동제목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에 따른 보세창고 보관료 지출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창고 보관료는 화물의 보관 온도(냉동·냉장·상온), 부피(CBM), 중량 및 보세구역의 위치(항만·공항)에 따라 요율 체계가 극명하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평균가 산출이 불가능함.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전력비와 유지비가 포함된 할증 요율이 적용되어 일반 화물보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해당 비용은 모든 수입 영업자에게 일괄 부과되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특정 영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임. 즉, 영업자가 수입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을 방지했다면 충분히 적용 제외 가능한 성격의 비용임 - 보관료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은 영업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고위해 식품의 수입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규제 순응 효과'를 유도함. 결과적으로 10일간의 보관료 발생이라는 개별 기업의 손실보다, 국민 건강 보호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통해 절감되는 사회적 의료 비용 등의 공익적 편익이 현저히 클 것을 판단됨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활동제목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 수행

편의항목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 수수료 편익
편익	555,925,24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등급 부적합 건수 X 증가하는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15회) + 2등급 부적합 건수 X 증가하는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5회)) X 정밀검사 수수료 X 영업이익률(%) $((31 \times 15 + 360 \times 5) \times 532966 \times 0.0582)$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수행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분석수수료 편익은 위해등급(잠정) 1~2등급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정밀검사 수수료 비용에 시험·검사기관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함 <p>* (영업이익률 근거)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 : 5.82%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3)</p>

③정부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위해도 중심의 수입검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
편의항목	위험 기반 자원 배분 최적화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 행정 실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률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대신, 위해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행정력을 집중(5회→20회 상향)함으로써 한정된 검사 인력과 예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저위해 항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방지하고,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 대응하는 위험 기반 관리 가능 - (사후 관리 비용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통관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유통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회수(리콜), 위해 확산 방지 조치, 피해 보상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후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식품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과 그에 따른 민원 대응, 국회·언론 등 대외적 갈등 해결에 투입되는 범정부적 차원의 유무형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큼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수입식품을 구매·소비하는 일반 국민(소비자)
활동제목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편익항목	고위해 수입식품 섭취 예방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식품 노출 차단에 따른 건강권 보호) IARC 1군 발암물질이나 식중독균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항목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검사 횟수를 대폭 상향(5회→20회)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시장 유입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 위험 기반의 '선택과 집중' 검사 체계는 한정된 행정력을 고위험군에 집중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식품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향상 가능 -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절감) 위해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 질환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 비용 지출을 억제하며, 대규모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리콜 비용, 사회적 혼란, 행정적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강화된 검사 체계 운영으로 얻는 정성적·정량적 편익이 매우 큼 -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국가가 더 엄격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이 검증된 식품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함